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은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창업여건이 열악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시 우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제4호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을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생략) ② 중소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 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수도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2 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 경지역을 제외한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다) 외의 지역에 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 하는 창업기업</u>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3
----------	------

발의연월일 : 2024. 7. 19.

발 의 자 : 구자근 · 박정하 · 김선교
박덕흠 · 인요한 · 김석기
유상범 · 최수진 · 박준태
강대식 · 김장겸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은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창업여건이 열악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시 우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생 략)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 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